##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6

발의연월일: 2024. 6. 10.

발 의 자:이종배·김정재·강대식

안철수 · 김용태 · 박대출

유영석 · 김승수 · 성일종

서천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여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이하"백년소상공인"이라 함)으로 확인하고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한편 올해 1월 16일 법률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었으나, 백년소상공인 점포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 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는 반영되지 않았음.

이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상권조합과 마찬가지로,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있도록 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체계적으로육성·지원하고자 함(안 제16조의6 신설).

#### 법률 제 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053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3에 제1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6(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①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 13호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의 등록, 준수사항,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053호 소상공인 보호 및	법률 제20053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lt;신 설&gt;</u>	제16조의6(온누리상품권 가맹점
	<u>특례) ① 제16조의2에 따라 지</u>
	정된 백년소상공인은 「전통시
	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
	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가
	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의 등록, 준수사항,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및 제74조를 준
	<u>용한다.</u>